세종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 수자인 입주자 모집공고 M2블록

4-1생활권 M2블록 리슈빌수자인 입주자 모집공고
(수루배마을 3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9.2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유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2538호(2016.09.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2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 29층, 24개동 7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아파트 1,225대, 근린생활시설 7대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39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7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계	이전기관 종사자등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해당동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6001242-01	84.7971	84A	84.7971	25.4038	110.2009	3.9872	49.9803	164.1684	62.9900	192	96	19	10	10	5	52	306동, 307동, 311동, 312동, 318동, 319동, 323동	11	2019년 05월 예정
	2016001242-02	84.6291	84B	84.6291	26.4359	111.0650	3.9793	49.8813	164.9256	62.8652	213	107	21	11	10	6	58	308동, 309동, 310동, 313동, 314동, 315동, 316동, 317동, 320동, 321동, 322동	17	
	2016001242-03	84.4377	84C	84.4377	26.4244	110.8621	3.9702	49.7685	164.6008	62.7230	65	33	6	3	3	2	18	307동, 311동, 312동, 318동	4	
	2016001242-04	84.9388	84D	84.9388	25.5103	110.4491	3.9939	50.0638	164.5068	63.0953	7	4	-	-	-	-	3	323동	1	
	2016001242-05	98.6043	98A	98.6043	30.2557	128.8600	4.6364	58.1184	191.6148	73.2464	17	9	-	1	1	-	6	306동	1	
	2016001242-06	98.8220	98B-1	98.8220	31.8456	130.6676	4.6466	58.2467	193.5609	73.4081	2	1	-	-	-	-	1	315동, 321동		
	2016001242-07	98.7365	98B-2	98.7365	31.6013	130.3378	4.6426	58.1964	193.1768	73.3446	2	1	-	-	-	-	1	315동, 321동		
	2016001242-08	98.8758	98C-1	98.8758	31.7732	130.6490	4.6492	58.2787	193.5769	73.4481	1	0	-	-	-	-	1	316동		
	2016001242-09	98.7145	98C-2	98.7145	31.1654	129.8799	4.6416	58.1834	192.7049	73.3283	1	0	-	-	-	-	1	316동		
	2016001242-10	98.8342	98C-3	98.8342	32.4061	131.2403	4.6473	58.2539	194.1415	73.4172	1	0	-	-	-	-	1	316동		
	2016001242-11	98.4713	98D	98.4713	30.5568	129.0281	4.6302	58.0400	191.6983	73.1476	4	2	-	-	-	-	2	308동, 309동	2	
	2016001242-12	98.6071	98E	98.6071	31.6647	130.2718	4.6365	58.1201	193.0284	73.2485	5	3	-	-	-	-	2	307동, 311동, 312동, 318동		
	2016001242-13	102.6287	102A	102.6287	32.7804	135.4091	4.8257	60.4905	200.7253	76.2359	266	132	-	13	13	-	4	100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5동, 324동	12	
	2016001242-14	105.9386	105A	105.9386	33.2977	139.2363	4.9813	62.4414	206.6590	78.6946	2	1	-	-	-	-	1	308동, 309동		
	2016001242-15	134.8864	134A	134.8864	43.9588	178.8452	6.3424	79.5035	264.6911	100.1979	6	3	-	-	-	-	3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5동, 324동		

※ 상기 주택형 98B-2, 98C-2, 98D, 134A 타입은 테라스 구조이며,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면적조건이 있는 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 신청하여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동별(라인별)	공급세대	층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계약시	1회(10%) 2016.12.20	2회(10%) 2017.05.20	3회(10%) 2017.10.20	4회(10%) 2018.04.20	5회(10%) 2018.09.20	6회(10%) 2019.01.20	잔금 30% 입주지정일
84.7971 (84A)	306동(1호라인) 307동(2호라인) 311동(1~3호라인) 312동(1~3호라인) 318동(1~3호라인) 319동(1호라인) 323동(1~4호라인)	192	1층	2	66,648	218,552		285,200	28,520	28,520	28,520	28,520	28,520	28,520	28,520	85,560
			2층	13	66,648	224,752		291,400	29,140	29,140	29,140	29,140	29,140	29,140	29,140	87,420
			3층	15	66,648	234,152		300,800	30,080	30,080	30,080	30,080	30,080	30,080	30,080	90,240
			4층	16	66,648	240,452		307,100	30,710	30,710	30,710	30,710	30,710	30,710	30,710	92,130
			5층~14층	131	66,648	246,752		313,400	31,340	31,340	31,340	31,340	31,340	31,340	31,340	94,020
			15층이상	15	66,648	252,952		319,600	31,960	31,960	31,960	31,960	31,960	31,960	31,960	95,880
84.6291 (84B)	308동(1,2호라인) 309동(1,2호라인) 310동(1,2호라인) 313동(1,2호라인) 314동(1,2호라인) 315동(1,2호라인) 316동(1,2호라인) 317동(1,2호라인) 320동(1,2호라인) 321동(1,2호라인) 322동(1,2호라인)	213	1층	11	66,516	212,084		278,600	27,860	27,860	27,860	27,860	27,860	27,860	27,860	83,580
			2층	17	66,516	218,284		284,800	28,480	28,480	28,480	28,480	28,480	28,480	28,480	85,440
			3층	19	66,516	227,484		294,0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88,200
			4층	22	66,516	233,584		300,100	30,010	30,010	30,010	30,010	30,010	30,010	30,010	90,030
			5층~14층	138	66,516	239,684		306,200	30,620	30,620	30,620	30,620	30,620	30,620	30,620	91,860
			15층이상	6	66,516	245,784		312,300	31,230	31,230	31,230	31,230	31,230	31,230	31,230	93,690
84.4377 (84C)	307동(1호라인) 311동(4호라인) 312동(4호라인) 318동(4호라인)	65	1층	3	66,366	211,734		278,100	27,810	27,810	27,810	27,810	27,810	27,810	27,810	83,430
			2층	3	66,366	217,834		284,200	28,420	28,420	28,420	28,420	28,420	28,420	28,420	85,260
			3층	4	66,366	227,034		293,400	29,340	29,340	29,340	29,340	29,340	29,340	29,340	88,020
			4층	4	66,366	233,134		299,500	29,950	29,950	29,950	29,950	29,950	29,950	29,950	89,850
			5층~14층	39	66,366	239,234		305,60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91,680
			15층이상	12	66,366	245,434		311,800	31,180	31,180	31,180	31,180	31,180	31,180	31,180	93,540
84.9388 (84D)	323동(2호라인)	7	4층	1	66,760	239,340		306,10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30,610	91,830
			5층~10층	6	66,760	245,640		312,400	31,240	31,240	31,240	31,240	31,240	31,240	31,240	93,720
98.6043 (98A)	306동(2호라인)	17	1층	1	77,500	201,546	20,154	299,200	29,920	29,920	29,920	29,920	29,920	29,920	29,920	89,760
			2층	1	77,500	207,637	20,763	305,900	30,590	30,590	30,590	30,590	30,590	30,590	30,590	91,770
			3층	1	77,500	216,819	21,681	316,000	31,600	31,600	31,600	31,600	31,600	31,600	31,600	94,800
			4층	1	77,500	226,000	22,600	326,100	32,610	32,610	32,610	32,610	32,610	32,610	32,610	97,830
			5층~14층	10	77,500	235,182	23,518	336,200	33,620	33,620	33,620	33,620	33,620	33,620	33,620	100,860
			15층이상	3	77,500	241,273	24,127	342,90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102,870
98.8220 (98B-1)	315동(1호라인) 321동(1호라인)	2	1층	2	77,672	198,935	19,893	296,500	29,650	29,650	29,650	29,650	29,650	29,650	29,650	88,950
98.7365 (98B-2)	315동(1호라인) 321동(1호라인)	2	2층	2	77,604	219,724	21,972	319,30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95,790
98.8758 (98C-1)	316동(1호라인)	1	1층	1	77,714	198,806	19,880	296,40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88,920
98.7145 (98C-2)	316동(1호라인)	1	2층	1	77,587	218,740	21,873	318,200	31,820	31,820	31,820	31,820	31,820	31,820	31,820	95,460
98.8342 (98C-3)	316동(1호라인)	1	3층	1	77,681	215,290	21,529	314,500	31,450	31,450	31,450	31,450	31,450	31,450	31,450	94,350
98.4713 (98D)	308동(1호라인) 309동(1호라인)	4	1층	2	77,396	219,550	21,954	318,90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95,670
			3층	2	77,396	235,822	23,582	336,800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33,680	101,040
98.6071 (98E)	307동(2호라인) 311동(3호라인) 312동(1,3호라인) 318동(2호라인)	5	1층	5	77,503	225,089	22,508	325,100	32,510	32,510	32,510	32,510	32,510	32,510	32,510	97,530
102.6287 (102A)	301동(1,2호라인) 302동(1,2호라인) 303동(1,2호라인) 304동(1,2호라인) 305동(1,2호라인) 324동(1,2호라인)	266	1층	2	80,664	224,124	22,412	327,200	32,720	32,720	32,720	32,720	32,720	32,720	32,720	98,160
			2층	12	80,664	230,851	23,085	334,600	33,460	33,460	33,460	33,460	33,460	33,460	33,460	100,380
			3층	12	80,664	240,851	24,085	345,600	34,560	34,560	34,560	34,560	34,560	34,560	34,560	103,680
			4층	12	80,664	250,851	25,085	356,600	35,660	35,660	35,660	35,660	35,660	35,660	35,660	106,980
			5층~14층	119	80,664	260,942	26,094	367,700	36,770	36,770	36,770	36,770	36,770	36,770	36,770	110,310
			15층이상	109	80,664	267,579	26,757	375,0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12,500
105.9386 (105A)	308동(1호라인) 309동(1호라인)	2	2층	2	83,265	217,941	21,794	323,0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96,900
134.8864 (134A)	301동(1호라인) 302동(1호라인) 303동(1호라인) 304동(1호라인) 305동(1호라인) 324동(1호라인)	6	최상층	6	106,018	472,530	47,252	625,800	62,580	62,580	62,580	62,580	62,580	62,580	62,580	187,740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 절사(세대별 대지지분은 소수점 5자리 이하 절사)

주택형(㎡)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98A	98B-1	98B-2	98C-1	98C-2	98C-3	98D	98E	102A	105A	134A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측세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분양가격은 별도 안내됩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주후 과세신고 및 과세금액의 입주자 납부 의무.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이전기관 종사자 등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의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자 및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의 직계비속으로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신청하는 경우 포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09.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서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988-2, 98C-2, 98D, 134A 타입의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급한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 고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못했을 자라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음
  - 1세대 내 1인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 해당 신청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1.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http://apt.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2. 세종4-1 리슈빌수자인 홈페이지 접속 (http://www.리슈빌수자인.com) → 메인화면의 "이전공무원 청약접수(http://apt.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7:3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대상세대 : 총 392세대 (단위: ㎡/세대)

구분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세대수	96	107	33	4	9	1	1	-	-	-	2	3	132	1	3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장애인의 경우 해당기관(세종시청,대전시청,충청남도청)의 장애인 복지과)에서 당사로 통보한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함.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해당기관
  - 철거주택 소유자: LH 세종사업본부 / 중소기업근로자: 대전지방중소기업청 / 국가유공자: 대전지방보훈청 / 장애인: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시 / 군인: 국방부
  -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이전기관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총 46세대 (단위: ㎡/세대)

구분	대상세대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철거주택소유자	6	3	2	1	-	-	-	-	-	-	-	-	-	-	-	-
장애인	17	7	8	2	-	-	-	-	-	-	-	-	-	-	-	-
국가유공자	8	3	4	1	-	-	-	-	-	-	-	-	-	-	-	-
중소기업근로자	7	3	3	1	-	-	-	-	-	-	-	-	-	-	-	-
군인	8	3	4	1	-	-	-	-	-	-	-	-	-	-	-	-
계	46	19	21	6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 주택의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함.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요건을 갖춘자
    * 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대상세대 : 총 73세대

구분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세대수	10	9	11	10	3	3	-	-	1	-	-	-	13	13	-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09.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고
계	65				
(1) 미성년 자녀수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③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단,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하여야 함

■ 20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일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세대 : 총 46세대 (단위: ㎡/세대)

구분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세대수	10	9	11	10	3	3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09.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당첨자 명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세대주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고 1순위가 된 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대상세대 : 총 23 세대

구분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세대수	3	3	3	2	1	-	-	-	-	-	-	-	4	4	-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제1항에 의거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09.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5.09.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지역(세종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1년미만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로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85㎡ 이하 : 가점제 적용(40%), 추첨제(60%)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100%)	전국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85㎡ 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봄.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제 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전용 85㎡이하는 청약가점제(40%), 추첨제(60%), 85㎡ 초과는 청약추첨제(100% 적용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10.14.) 이후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구비서류(은행창구 접수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2016년 10월 04일(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기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2016년 10월 04일(화)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14:00까지 견본주택에 입장한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신청 관련 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 4-1생활권 M2블록 리슈빌수자인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다자녀/노부모	2016년 10월 04일(화) 10:00~14:00 * 접수자에 한함 / 2016년 10월 05일(수) 10:00~14:00 * 기타지역 접수자에 한함			
		신혼부부	2016년 10월 04일(화) 10:00~14:00 * 당해지역 접수자에 한함 / 2016년 10월 05일(수) 10:00~14:00 * 기타지역 접수자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16년 10월 06일(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2순위	2016년 10월 07일(금) 08:00~17:30			

※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므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당첨자격을 확인하게 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2016.10.05(수) 14:00 • 확인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 일시: 2016.10.13(목) • 확인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6.10.18(화)~2016.10.20(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기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일시: 2016.10.05(수) 17:00 • 장소: 당사 견본주택 게재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일시: 2016.10.13(목) • 장소: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청약 당첨자의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당첨으로 인해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는 소명기간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6.10.13 ~ 2016.10.22 (당첨자 발표일 포함부터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10.13(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세종 4-1 M2블록 리슈빌수자인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은 공개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9.29.)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며 최하층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선정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또한, 입주자가 추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일반공급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정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현재 1년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9.29.)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게 우선 배정 합니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음 • 입주자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예비입주자의 수가 동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V 계약체결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계약시	공통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표초본(1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필요 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주민등록표초본(만30세이전에 혼인 관계가 있어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로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 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 확인서,이전기관 발급(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29.) 이후 발행분(특별공급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법 위반 및 청약관련법을 통해 공급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여부 및 소유권 이전 여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3항 및 제57조 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301-0198-6897-1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대출)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최초일 전일) 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1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VI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84.7971	84A	26.8267	15,260,000	2,000,000	13,260,000
84.6291	84B	29.3547	16,380,000	2,000,000	14,380,000
84.4377	84C	32.8504	16,380,000	2,000,000	14,380,000
84.9388	84D	26.1681	14,530,000	2,000,000	12,530,000
98.6043	98A	34.6669	17,390,000	2,000,000	15,390,000
98.8220	98B-1	34.7382	17,360,000	2,000,000	15,360,000
98.7365	98B-2	26.2785	15,270,000	2,000,000	13,270,000
98.8758	98C-1	35.6475	17,500,000	2,000,000	15,500,000
98.7145	98C-2	30.4969	16,660,000	2,000,000	14,660,000
98.8342	98C-3	36.8475	17,010,000	2,000,000	15,010,000
98.4713	98D	37.6905	17,190,000	2,000,000	15,190,000
98.6071	98E	34.7767	15,310,000	2,000,000	13,310,000
102.6287	102A	39.3570	17,380,000	2,000,000	15,380,000
105.9386	105A	36.4401	17,840,000	2,000,000	15,840,000
134.8864	134A	57.6190	24,660,000	3,000,000	21,660,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발코니 확장비(계약금, 잔금)	301-0198-6902-8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계좌로 분양대금, 시스템에어컨 옵션공사비 및 유상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되어 별도 계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사양은 제조사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등으로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시스템 창호는 단열 성능과 관계없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에 대하여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를 통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에게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유상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84 type	선택1	3대	기본(거실+주방+침실1)	4,300,000	2,000,000	2,300,000	LG전자
	선택2	4대	선택1 + 침실2	5,600,000	2,000,000	3,600,000	LG전자
	선택3	5대	선택2 + 침실3	6,600,000	2,000,000	4,600,000	LG전자
98type	선택1	3대	기본(거실+주방+침실1)	4,900,000	2,000,000	2,900,000	LG전자
	선택2	4대	선택1 + 침실2	6,000,000	2,000,000	4,000,000	LG전자
	선택3	5대	선택2 + 침실3	7,200,000	2,000,000	5,200,000	LG전자
	선택4	6대	선택3 + 가족실	8,200,000	2,000,000	6,200,000	LG전자
102type	선택1	3대	기본(거실2대+침실1)	4,900,000	2,000,000	2,900,000	LG전자
	선택2	4대	선택1 + 침실2	6,000,000	2,000,000	4,000,000	LG전자
	선택3	5대	선택2 + 침실3	7,200,000	2,000,000	5,200,000	LG전자
	선택4	6대	선택3 + 가족실	8,200,000	2,000,000	6,200,000	LG전자
105type	선택1	3대	기본(거실+주방+침실1)	4,900,000	2,000,000	2,900,000	LG전자
	선택2	4대	선택1 + 침실2	6,000,000	2,000,000	4,000,000	LG전자
	선택3	5대	선택2 + 침실3	7,200,000	2,000,000	5,200,000	LG전자
	선택4	6대	선택3 + 침실4	8,200,000	2,000,000	6,200,000	LG전자
134type	선택1	3대	기본(거실+주방+침실1)	5,100,000	2,000,000	3,100,000	LG전자
	선택2	4대	선택1 + 침실2	7,100,000	2,000,000	5,100,000	LG전자
	선택3	5대	선택2 + 침실3	8,100,000	2,000,000	6,100,000	LG전자
	선택4	6대	선택3 + 가족실	9,100,000	2,000,000	7,100,000	LG전자
	선택5	7대	선택4 + 다실	10,200,000	2,000,000	8,200,000	LG전자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옵션 공사비(계약금, 잔금)	301-0198-6910-5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공사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종목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한된 사항 외에 설치,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주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기본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천설 선택 시 화장실, 알파룸, 복층세대의 다락방 등은 어레층 방에는 실내기가 설치되지 않음. (각 타입의 평면도 참조)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 유상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제품명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전타입	전기오븐렌지	MZ385EBT	400,000	200,000	200,000	LG전자
	하이브리드 쿡탑(3구)	EGH-M300	600,000	200,000	400,000	엔텍
	TBI 냉장고	RS674CHQFSR	4,800,000	1,000,000	3,800,000	삼성전자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하이브리드쿡탑 선택 시 기본형 쿡탑(4구) 금액을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 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옵션 공사비(계약금, 잔금)	301-0198-6910-51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공사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하이브리드쿡탑 판매가격은 기존 가스쿡탑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음.
- 하이브리드쿡탑은 가스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제품으로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됨.

■ 테라스세대 및 복층형 세대 유의사항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일지라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람.
- 카달로그 및 각종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오니,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동일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옥외공간)여부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형태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의 유무 또는 위치에 따라 창호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 발코니 창호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에게 인지시킴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자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에 다른 세대 등이 위치하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불법개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의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홈통 배관이 골조 등에 매입 시공되거나 노출되어 계획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및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맨,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거실,주방,식당,복도,안방,침실,드레스룸, <타일, 강화대리석>현관 <타일>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정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정 도장, 거실아트월(디자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동합우편AP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정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4)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 젠다이(강화대리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장, 코핑,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수전, 악세사리, 샤워부스,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TV,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백타일, 백판넬,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설비배관, 전기, 통신,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 배관/배선(주방TV용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6)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장)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m2,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7971	84.6291	84.4377	84.9388	98.6043	98.8220	98.7365	98.8758
타입	84A	84B	84C	84D	98A	988B-1	98B-2	98C-1
금액	24,739,000	25,536,000	24,694,000	26,209,000	29,689,000	32,222,000	32,141,000	32,218,000
구분	98.7145	98.8342	98.4713	98.6071	102.6287	105.9386	134.8864	-
타입	98C-2	98C-3	98D	98E	102A	105A	134A	-
금액	32,028,000	32,363,000	31,818,000	30,014,000	31,720,000	33,792,000	40,490,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창호,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의 입주지정기간내(최대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시설물이 훼손되어서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 대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검측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료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마감재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세대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 공유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민간건설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인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공급신청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른 사업주체에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청약이 가능
  2.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이 다를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한 신청서(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 본인 책임임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자는 공급신청 전에 아파트의 공급조건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또는 계약 취소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행복도시 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4-1생활권은 "수루배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 따른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접수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주거전용면적)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된 주택형 또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공급면적으로 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외부 창호의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및 공부정리 절차에 따라 입주자가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급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쟁 및 발생, 정부정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의 지연 및 입주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다로그 등 홍보제작물에는 연출용 시공부분 및 유상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실제와 비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급물량의 주택형 설치세대 중 일부 세대만 설치하였으므로 실제 설치되는 각 세대와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 자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 견본주택 자재보다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 토목, 조경 등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측세대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등에 대해 불법 개조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음
- 세대 창호의 경우 세대별 방향과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은 본 공사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미 진행 중이므로 입주 후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301,324,318,319,317,320,316,321동을 가로지르는 보행가로는 괴화산과 근린공원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공성의 보행가로로 생활권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민의 외지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특화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계획된 보행가로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보행 커뮤니티 가로 특화계획에 따라 문주는 지정된 형태("개방형" 표현 제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사 시 디자인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종시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의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에 공원으로 단지와 보행동선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연결부위의 설치계획 내용은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인접부지(단지 동측 조촐학교, 공공청사, 공원, 중학교, 보육시설, 서측(남서측) 길 건너편 공동주택, 남측 상업업무시설 건립 예정)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조망에 따른 눈부심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주변의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당 부지 외 대지이므로 인한 요구에 의한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남서측: 폭20M 왕복2차선, 남측: 폭20M 왕복2차선, 북서측: 폭27.5M 왕복4차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지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도로폭, 차선수,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신호체계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능변경 등은 입주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옹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 4-1생활권의 M2(L3)블록은 색채특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색채심의를 득한 사업장으로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입주자 개인 또는 연대가 색채의 변경을 시행할 수 없으며 색채변경 시행 할 경우 행복청의 도시미관심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 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되며, 별도의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 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장의센터등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정체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탑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가감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및 일부구간 지하2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의 모든 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편,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것이며 배치된 동별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한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주주돌(설비 환기휀 환기구, 전기,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동선의 편리성 및 효용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동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폭20M, 왕복2차선), 남측(폭20M, 왕복2차선), 북서측(폭27.5M, 왕복4차선)은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설비는 세종시 전체 관로설비 공사일정에 따라 사용시점이 당 현장의 준공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재활용창고 및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위치는 주후 조경계획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옥외공간,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음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포장 및 공간 배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장,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등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도로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의 대지조성 및 주동의 필로티 바닥의 설치 계획(바닥높이, 난간설치 유무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부지에 코어 및 부속실 지붕 설치가 된 곳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설은 지하1층 동 출입구에 설치예정이며, 설치위치 불합리등의 사유발생시 통합설치 등 또는 위치이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THK 30(경량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3급)이상 인증제품) 층간소음재 시공예정이나 입주후 입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에 주방환기는 개별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1개소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1~3개층(필로티포함) 석재마감으로 시공되며(색채특화디자인에 따른 도장면변장구, 보행출입 상부 캐노피, 필로티 내부 등 일부부위는 제외), 색상 및 디자인은 색채특화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시공되어지나 색채변경 불합리한 부분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관청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옥상조경은 대부분 옥상에 설치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M.A의 건축심의 등의 조정에 따라 식재계획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불가하며 향후 식재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관리 및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의 경우 식재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출입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인접 특화를 위하여 필로티 높이 등이 설치되며 일조,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각동의 하부 또는 별동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분산배치 되어 있으므로 이용 이용자들로 인한 생활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등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형, 안내카다록, 설계도면을 참조하시어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지붕과 면한 일부 세대의 방범이 취약할 수 있고, 옥상 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관리에 의해 소음, 사생활권,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선큰 및 테라스는 세대 디자인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공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며 상부 낙하물등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선큰 및 테라스진입시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입주민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주의 하여야 함
- 각동 일부 최상층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에 준하여 태양광 집열판 구조물이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조망권 침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기능과 효율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중계기는 전파미래방지장치를 갖추어 301동, 302동, 310동, 311동, 315동 317동, 318동, 323동 옥상, 지하주차장 및 화단 일부 서비스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상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선큰 및 중앙공원등 테마공원에는 입주민 다수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여야 하며 모형, 분양 카다록 등을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필로티 등의 주변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다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건축심의에 따른 자연계 거치대가 1단 또는 2단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이동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주 출입구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학원차량 이용을 위한 승·하차장(Drop Off-Zone)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대형차량의 진입, 소음, 차량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구획(7대)되며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외부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와 인접한 동(301동~304동,313동,317동,318동,322동,323동,324동 등)은 이용자 이용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인접 동 세대의 경우 자체적인 프라이버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323동 1층 및 2층 필로티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이용자를 위한 계단실, 승강기 및 외부공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는 시설의 냉난방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심의결과 및 협의내용에 따라 종류, 규모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301~305동, 324동 최상층에 위치한 134형의 주변에 위치한 옥상 부위는 해당 부위에 인접 세대만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며, 옥상에 설치된 하부세대 환기구, 통기관 등 설비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01동~303동, 323동, 324동 1층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통로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보행녹도(301,318,319,317,321동 가로지름)는 공개 지정되어 상시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주후 아래 사항 미 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3. 욕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음.
7. 전기, 설비 배관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에 표현된 욕실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등에 설치될 수 있음.
11.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2.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강마루로 시공방식 및 조색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 하부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5.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6. 본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17. 본공사시 천정등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조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본공사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음.
19. 본공사시 주방가구 하부에는 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음.
20.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21.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22.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23.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4.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5. 각 세대 도어에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쇄과정상 오타,오기,실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리스트 등을 필히 열람하여야 함
2. 세대는 도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측을 통하여 시공되므로 시공오차 및 허용오차 범위내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함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전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조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 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세대 실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예정임.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주동이 혼합되어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4. 전체 동의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앞 조명으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의 저층부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음.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할 수 있음.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등 공용부분은 행정관청의 디자인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되며 입주민의 개인적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실시설계 검토등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 및 투시도, 조감도, 투시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등을 통한) 시설물의 배치, 구획, 형태, 색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 학교 인접 주세는 세종시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것이며, 학교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관청의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상기 학교 및 설립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5. 배정학교는 조등학교는 반곡조등학교(가칭), 중학교는 반곡중학교(가칭), 고등학교는 반곡고등학교(가칭)로 세종시 전체 학군으로 지망할 수 있으며, 배정학교는 현재 예정사항으로 추후 학교명칭/배정학교가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제공품목은 상담사 및 관련도서를 열람하여야 확인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질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후 관리 운영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에 부수되는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퍼팅장), 온실,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갤러리, 창의센터, 바이크스테이션(2), 스카이커뮤니티(스카이라운지, 스카이가든, 경비실(2), 기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외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2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단열조치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 부위 기준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방습층 단열재 실내측 설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 준수함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사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변압기로 인증 제품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가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센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표11호에 따라 역률개선용콘덴서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를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1개 이상 설치 및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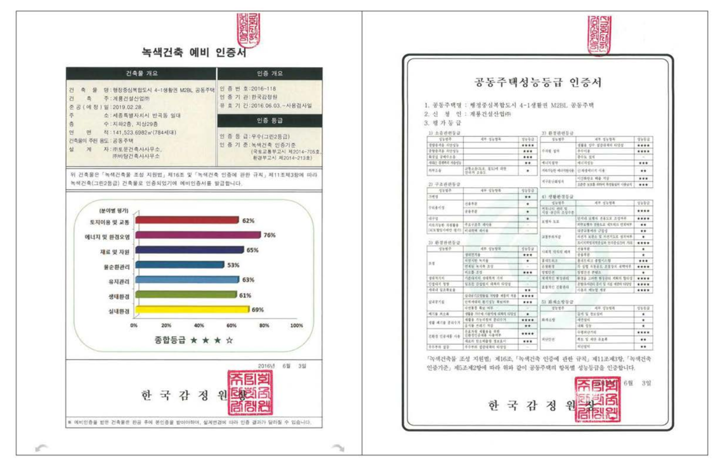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등급 기준	AA등급 설치항목(1)	설치항목(2)	비 고
항 목	1	성형배선	침입감지기	
	2	배선(Cat 5e 4페어 이상)	차량통제기	
	3	예비배관(16C 이상)	전자경비시스템	
	4	집중구내통신면적(2㎡)	대기전력 차단장치	
	5	동신배관실(TPS)	욕실폰	
	6	단지 서버실(MDF)	주방 TV	
	7	폐쇄회로 TV장비(CCTV)	일괄소등 제어	
	8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 도어락	
	9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 카메라	
	10	난방 제어기		
	11	현관방범 감지기		
	12	주동현관 통제기		
	13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통신 감리	비 고
회 사 명	(주)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부흥이엔씨	(주)한빛안전기술단	
감리금액(원)	1,962,998,400	519,445,968	275,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50,888,644,632	공사비	토목	20,691,263,000
	기간이자	571,017,718		건축	77,721,556,000
	그밖의 비용	5,103,166,650		기계설비	11,186,214,000
간접비	설계비	1,998,244,080		그밖의 공종	19,721,361,000
	감리비	2,757,444,368		그밖의 공사비	25,376,540,000
	부대비	29,146,195,715	그밖의 비용	그밖의 비용	13,458,352,837
합 계		258,620,0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81,034,000,000	06712016-101-00018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에서 지정한 계좌를 말하며,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가격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한 채무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입주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는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계룡건설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법인등록번호		160111-0003121	160111-0003121
사업자등록번호		314-81-07954	314-81-07954
상 호		(주)보성	(주)한양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법인등록번호		200111-0003205	110111-0144347
사업자등록번호		408-81-07206	110-81-146111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리슈빌수자인.com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분양문의 044-868-177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54,120.0000㎡	53,458.0694㎡	285.0000㎡	376.9306㎡	22.03%	179.98%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RicheVille sujain
리슈빌 수자인
세종 4-1생활권 P2구역

시행 계룡건설 보성 시공 계룡건설 (주)한양